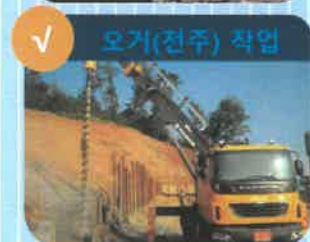


가스배관 인근 작업 시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들



가스배관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우리공사 안전관리원이
안내 또는 입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공사 신고 방법

전화

1644-0001 EOCs
080-777-0019 한국가스공사
080-555-0019 한국가스기술공사

인터넷

www.eocs.or.kr

모바일

m.eocs.or.kr

APP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QR코드



천연가스 배관 보호를 위한

굴착공사 신고 안내



안전한 굴착공사와 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굴착공사 신고

굴착공사신고(EOCS) 1644-0001
한국가스공사 080-777-0019
한국가스기술공사 080-555-0019



모든 굴착공사는 착공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법령 위반시

- ▷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굴
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배관 매설 유무
를 확인하고, 굴착위치와 배관위치를 표시하
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
센터로부터 굴착공사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사례



<2019년 2월 19일 SBS 기사 발췌>

굴착 공사하다 가스관 파손한 시공사 안전책임자 등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파손시켜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혐의(도시가스사업법 위반)로 시공사 공사
현장 안전보건 총괄관리책임자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
니다.

천연가스 관련 시설물 및 주변 굴착공사 시 안내

굴착공사 신청 및 이용절차

- 1 굴착공사 계획 신고
- 2 접수번호 발급
-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4 굴착공사 개시 통보
- 5 굴착공사 시행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
1644-0001 www.eocs.or.kr



굴착신고 사전협의 담당자
입회 후 굴착

착공 전 시험굴착 등 가스관 위치의 재확인과
방호방안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잠깐! 굴착공사 시 주변에
아래 시설물이 보이면
반드시 연락주세요!

전화 인터넷 1644-0001
www.eocs.or.kr
A P P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
템
한국가스공사 080-777-0019
한국가스기술공사 080-555-0019



굴착공사 신청 및 이용절차

1 굴착공사 계획 신고



2 접수번호 발급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회합·공동표시

표시·단독표시

4 굴착공사 개시 통보



5 굴착공사 시행



도시가스, 고압가스, LPG배관망공급사업자 등에게 반드시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굴착공사 신고 방법

전 화 : 1644-0001
(전국 동일, 연중무휴)

인터넷 : www.eocs.or.kr

A P P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미신고 굴착공사 시 관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신고 편의와
도시가스 배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및 고압가스 배관 보호를 위한

굴착공사 신고는
1644-0001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법령 위반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 배관 매설 유무를 확인하고, 굴착위치와 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가스배관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 (LPG의 경우 0.01MPa 이상)인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굴착공사신고 1644-0001 굴착시행 24시간 전까지 반드시 **굴착신고**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 제외대상

-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매설상황 확인대상 사업자가 정보지원센터로부터 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신고 내용

굴착공사 발주사명, 굴착공사 회사명, 굴착공사 담당자명, 굴착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굴착공사 위치(주소), 굴착공사의 종류, 굴착공사 예정일자, 사용자 부지내 굴착공사시 가스사용자 인적사항 및 시설명

- 굴착공사 계획은 공사 시행 **24시간 (주말·공휴일은 요청 시간에 미포함)**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월요일 공사 건은 전주 금요일까지 신고, 토요일 공사 건은 목요일까지 신고.

-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 액화석유가스 시행규칙 제72조의 4

신고방법



위치 확인방법 결정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고압가스사업자 등은 해당 굴착현장 위치 및 매설된 가스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EOCs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배관 표시 방법

만나서 표시하기로 한 경우(회합)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LPG배관망공급사업자, 고압가스사업자 등의 입회하여 굴착공사 예정 지역에는 흰색 페인트, 매설된 가스 배관 직상부에는 **황색(도시가스, LPG) 및 적색(고압가스)** 페인트로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도시가스·LPG 배관망공급 고압가스 사업자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된 배관의 위치표시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 표시하기로 한 경우(표시)

굴착공사자 굴착공사 예정지역을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

도시가스·LPG 배관망공급 고압가스 사업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공사 위치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배관 직상부에 **황색(도시가스, LPG) 및 적색(고압가스)** 표시를 하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굴착공사의 게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 현장 및 매설배관에 대한 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굴착하여도 좋다”**라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가능 여부를 통보 받은 후 해당 도시가스사에 입회요청하여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